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1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 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2장 휴 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③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2.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2회, 20일인 경우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최종 허가를 얻는다.
4.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은 당해 각각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직권면직) 제1호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을 “제16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 1] 선서문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1】

## 선 서 문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별표 3】

## 공직자의 행동률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li> <li>○ 근검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2호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 을 “2025년 6월 30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를」 제15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0원” 을 “800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원” 을 “1,600원”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감면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생략)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  
-----  
-----  
----- 800원

2. -----  
-----  
----- 1,600원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4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81 호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1호 중 “숙박시설별료” 을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숙박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인 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별표 2]

## 당일 관광객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5명	5,000원	3,000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0명	5,000원	3,000천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p> <p>1. 시장은 <u>숙박시설별로</u>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p> <p>2·3 (생략)</p>	<p>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p> <p>1. ---<u>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u>---</p> <p>-----</p> <p>-----</p> <p>2·3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1]</b> 숙박관광객 지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숙박 시설별</th> <th style="width: 15%;">지원기준 인원</th> <th style="width: 60%;">지 원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외국인 (일반인관광객)</td> <td>관광호텔</td> <td>1회 10명</td> <td>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기 타 숙박시설</td> <td>1회 10명</td> <td>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 rowspan="2">외국인 (수학여행단체)</td> <td>관광호텔</td> <td>1회 30명</td> <td>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기 타 숙박시설</td> <td>1회 30명</td> <td>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 rowspan="2">내국인 (일반인관광객)</td> <td>관광호텔</td> <td>1회 30명</td> <td>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기 타 숙박시설</td> <td>1회 30명</td> <td>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 rowspan="2">내국인 (수학여행단체)</td> <td>관광호텔</td> <td>1회 40명</td> <td>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기 타 숙박시설</td> <td>1회 40명</td> <td>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body> </table> <p><b>[별표2]</b> 당일관광객 지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지 원 최소인원</th> <th style="width: 15%;">1 명 당 지원금액</th> <th style="width: 55%;">최 대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내·외국인관광객 (일반인관광객)</td> <td>80명</td> <td>3,000원</td> <td>3,000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숙박 시설별	지원기준 인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1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외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3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30명	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3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30명	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40명	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40명	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외국인관광객 (일반인관광객)	80명	3,000원	3,000천원	<p><b>[별표1]</b> 숙박관광객 지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지원기준 인원</th> <th style="width: 75%;">지 원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외국인</td> <td>일반 관광객</td> <td>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수학 여행단</td> <td>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 rowspan="2">내국인</td> <td>일반 관광객</td> <td>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r> <td>수학 여행단</td> <td>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td> </tr> </tbody> </table> <p><b>[별표2]</b> 당일관광객 지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지 원 최소인원</th> <th style="width: 15%;">1 명 당 지원금액</th> <th style="width: 55%;">최 대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td> <td>15명</td> <td>5,000원</td> <td>3,000천원</td> </tr> <tr> <td>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td> <td>10명</td> <td>5,000원</td> <td>3,000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기준 인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5명	5,000원	3,000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0명	5,000원	3,000천원
구 분	숙박 시설별	지원기준 인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1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외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3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30명	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인관광객)	관광호텔	1회 3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30명	3,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수학여행단체)	관광호텔	1회 40명	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기 타 숙박시설	1회 40명	2,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외국인관광객 (일반인관광객)	80명	3,000원	3,000천원																																																															
구 분	지원기준 인원	지 원 액																																																																
외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0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내국인	일반 관광객	1회 15명 10,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수학 여행단	1회 20명 5,000원×숙박인원×숙박일수																																																																
구 분	지 원 최소인원	1 명 당 지원금액	최 대 지원액																																																															
내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5명	5,000원	3,000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관광객)	10명	5,000원	3,000천원																																																															

군산시 공고 제 2022-84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4. 11.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의무직 공무원(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2003년 7월 1일자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인상하였으나,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직공무원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

(안 제2조 별표1, 별표2)

- (별표1) 일반직 공무원(전문의 및 일반의)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월 수당 지급액 각 30만원 인상

구분	전문의		일반의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갑지	월 609,000원이하	월 909,000원이하	월 518,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 (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등급별, 근속년수별 각 30만원 인상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454-2255, FAX : 063-454-22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조례 제 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업무등의 수당)” 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의료업무등” 을 “의료업무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 을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2]” 를 “별표 2”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6]” 을 “별표 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8” ” 을 “별표 8” 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5]” 를 “별표 5” 로 한다.

제5조 중 “[별표7]” 을 “별표 7”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와 관련)**

구 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와 관련)**

근무연수별 / 등급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1년 이상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5.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8”  
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7]과 같다.

[별표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5. ----- 별표 8-----  
-----

제4조(장려수당) -----  
-----  
-----  
-----  
-----  
-----  
----- 별표 5-----.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  
-----  
-----  
-----  
----- 별표 7-----  
-----.

[별표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별표1, 2에 의거 인당 월 30만원 인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
  - 의무직공무원(일반직의사) 1인 × 518,000원 × 12월 : 6,216,000원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은 1인당 3,600,000원

### 4. 작 성 자

작성자	군산시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연락처	(063) 454 -2220

군산시 고시 제2022-43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  
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5.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22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2. 4.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389-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요동길 64	20220406		20070528	성덕리 요동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475-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황길 26	20220404		20100125	월하리 서황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37-2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6길 23 (수송동)	20220404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74-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0길 22 (수송동)	20220404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924-1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신기길 27	20220404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신기길 27		20220404	건물신축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18-3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1길 34-3 (조촌동)	2022033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97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736	20220330		20090709	도로 옆으로 탑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638-2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염의서원길 26	2022032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염의서원길 26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866-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상금길 49	20220324		20100125	금암리 상금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681-73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안1길 20-14 (조촌동)	2022032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854-4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3길 32 (소룡동)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6-48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원성산2길 8	20220325	건물신축	20070528	옥봉리 원성산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82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759-44	20220325	건물신축	20090709	도로 옆으로 탑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83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759-28	20220325	건물신축	20090709	도로 옆으로 탐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82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759-46	20220325	건물신축	20090709	도로 옆으로 탐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68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695-38	20220325	건물신축	20090709	도로 옆으로 탐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68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695-46	20220325	건물신축	20090709	도로 옆으로 탐천이 흐르고 있음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18-4, 610-19, 664-1, 668-4, 668-7, 668-9, 713-2, 732-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77 (경암동)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186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407-59 (산북동)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444	전라북도 군산시 화흥길 7 (산북동)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75-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1길 11 (수송동)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830-1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3길 29 (소룡동)	20220325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2-4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군 산 시 장



### ◆ 사업의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외 19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나. 명 칭 :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대로 1-4 : B=3m, L=48m, A=97.2m<sup>2</sup>(폭원확장구간 개설)
  - 나. 중로 3-6 : B=3~6m, L=250m, A=1,167.7m<sup>2</sup>(폭원확장구간 개설)
  - 다. 소로 2-1120 : B=8m, L=60m, A=482.0m<sup>2</sup>(노선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권곡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경남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6.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로1-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492.8	68.0	군산시					
2	조촌동	739-7	대	319.6	29.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계	2필지			812.4	97.2						

○ 중로3-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492.8	99.0	군산시					
2	조촌동	739-2	대	177.9	68.5	군산시					
3	조촌동	739-3	대	226.6	87.2	군산시					
4	조촌동	739-4	대	196.9	75.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5	조촌동	739-5	대	239.9	97.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6	조촌동	739-6	수	10,904.1	28.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7	조촌동	739-53	잡	2,844.1	247.1	군산시					
8	조촌동	739-55	수	196.0	73.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9	조촌동	739-62	대	429.9	23.2	군산시					
10	조촌동	797	도	2,805.6	73.0	군산시					
11	조촌동	909	잡	2,636.3	294.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12	조촌동	963	도	1,500.9	1.0	군산시					
계	12필지			22,651.0	1,167.7						

○ 소로2-1120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조촌동	122-2	대	273.0	69.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2	조촌동	122-3	대	30.0	27.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3	조촌동	122-5	대	111.0	22.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4	조촌동	122-6	대	144.0	95.0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5	조촌동	122-7	전	330.0	160.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6	조촌동	122-12	대	63.0	50.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7	조촌동	122-18	전	189.0	59.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계	7필지			1,140.0	482.0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건물조서

○ 소로2-1120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 건			소유자		비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성명	주소	
1	조촌동	122-5	대	건물	콘크리트 (9.0m x 5.5m x 2.0m)	1채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2				건물	콘크리트 (9.5m x 5.5m x 3.0m)	1채			
3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12m x 5.5m x 2.5m)	1채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권곡동)	
4		122-6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9.0m x 7.0m x 4.0m)	1채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5		122-12	대	건물	샌드위치판넬+콘크리트 (12m x 6.5m x 4.0m)	1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6		122-2	대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3m x 10m x 10m)	1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계	4필지								

군산시 고시 제2022 - 50호

#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준공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2-29호 및 군산시 고시 제2018-42호로 지정·고시된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군산시청(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8일

군 산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금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 일원 (행복주택: 오룡동 947번지 일원)	79,103.9	

※ 행복주택 건립사업 면적(6-2획지) : 11,162.9㎡ (행복주택 : 10,512.2㎡, 도로 : 650.7㎡)

## 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및 공동주택건설방식(행복주택 건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현지개량방식: 군산시장,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 공동주택건설방식: 전북개발공사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5. 정비사업시행 기간

- 2011 ~ 2014. 12(현지개량방식)
- 2017 ~ 2022. 03(공동주택건설방식, 행복주택 건립)

6.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현지개량 용 지	공동주택 용 지	정비기반시설용지					공동이용 시설용지 경로당	비 고
				계	도로	소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면적(㎡)	79,103.9	47,823	10,512.2	20,513.7	9,938.7	765	2,477	7,333	255	
구성비(%)	100.0	60.5	13.3	25.9	12.6	1.0	3.1	9.2	0.3	

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등급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2	1090	8~ 13.5	집산 도로	605 (278)	송창동 14호광장	오룡동 대 3-2	일반 도로		건고 525 ( ' 67.7.25)	
소로	2	36	8	국지 도로	526 (405)	명산동 18-1 중 1-3	오룡동 834-79	일반 도로		건고 525 ( ' 67.7.25)	
소로	2	39	8	국지 도로	293 (95)	오룡동 823-1 중 2-3	오룡동 소 3-35	일반 도로		건고 525 ( ' 67.7.25)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73 (173)	오룡동 938 소 2-31	금광동 159-44 소 2-36	일반 도로		건고 525 ( ' 67.7.25)	
소로	3	34	6	국지 도로	92 (92)	금광동 157-53 소 2-36	오룡동 소 2-31	일반 도로		군산고 210 ( ' 96.6.1)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48 (108)	신평동 998-9 대 3-2	오룡동 834-79 소 2-36	일반 도로		건고 525 ( ' 67.7.25)	
소로	3	474	6	국지 도로	38 (38)	금광동 170-10 대 3-2	금광동 157-26 소 2-36	일반 도로		군산고607 (99.12)	
소로	3	475	6	국지 도로	32 (32)	금광동 170-36 대 3-2	금광동 170-66 소 2-36	일반 도로		군산고607 (99.12)	
소로	3	476	6	국지 도로	60 (60)	명산동 21-11 중 3-4	금광동 156-6 소 3-33	일반 도로		군산고607 (99.12)	

※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67	주차장	오룡동 931-5번지 일원	1,972	전북고사-29호 ( '12.2.17)	
86	주차장	명산동 20-8번지 일원	505	전북고사-229호 ( '13.10.4)	

나. 공간시설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1	공공공지	금광동 157-63번지 일원	7,333	전북고사-29호 ( '12.2.17)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9	공원	소공원	금광동 156-57번지 일원	765	전북고사-29호 ( '12.2.17)	

8.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가. 경로당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경로당 ①	군산시 오룡동 834-73번지 일원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li> <li>• 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지원시설</li> </ul>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은 존치하고, 기반시설용지에 편입된 건축물은 철거이주, 기타 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자력개발을 유도
- 공동주택(행복주택) 사업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은 철거

구 분	대상 건축물(호)	적용기준
소 계	682	-
존치/개량대상	495	현지개량
철거대상	187	6-2회차(공동주택 건립부지)에 포함된 건축물

※ 철거대상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내용이며, 소규모 부속 건축물 등은 제외

**11.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34	금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 일원	79,103.9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79,103.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3,534.9	80.3 주거용지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569	19.7 상업용지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1	방화지구	금광동 156-48번지 일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60,000 (15,569)	전북고사-136호 (‘87.10.31)	

**3)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참조’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sup>2</sup> )	
	계		69,165.2	
-	1-1	금광동 159-13번지 일원	2,793	
	1-2	금광동 157-23번지 일원	384	
	2-1	명산동 21-16번지 일원	4,390	
	2-2	금광동 156-57번지 일원	765	
	2-3	명산동 20-8번지 일원	505	
	3-1	금광동 157-14번지 일원	715	
	3-2	금광동 157-45번지 일원	5,542	
	4-1	금광동 157-63번지 일원	7,333	
	5-1	오룡동 834-89번지 일원	6,019	
	5-2	오룡동 931-5번지 일원	1,972	
	6-1	오룡동 896-36번지 일원	3,334	
	6-2	오룡동 947번지 일원	10,512.2	
	7-1	오룡동 832-8번지 일원	5,044	
	8-1	오룡동 832-93번지 일원	5,459	
	9-1	금광동 170-6번지 일원	3,888	
	10-1	금광동 170-73번지 일원	4,376	
	10-2	금광동 834-1번지 일원	255	
	11-1	금광동 153-4번지 일원	2,865	
11-2	송창동 155-27번지 일원	3,014		



•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6-2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기준)	허용 용도	- 제2호(공동주택)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1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위적인 절·성토 지양으로 지형변화의 최소화</li> <li>• 정비사업 시행 시 인구 및 생활수준에 맞는 용수 공급</li> <li>•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자재 및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를 확립</li> <li>• 정비구역 내 공공공지, 주차장 등 공공용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li> </ul>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개량과 홍수 시를 대비한 우·오수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요소 제거</li> <li>• 기존의 구역 내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도로계획고를 인접대지 지반고에 맞춰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조성</li> <li>•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li> </ul>
수 재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정비구역의 입지특성상 비교적 완만한 평탄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li> </ul>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li> <li>•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li> </ul>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포함

**14.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 현 황	·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금광초교, 월명초교) 및 중학교 1개소(군산중), 고등학교 1개소(군산기계공고), 대학교 1개소(서해대학)가 위치하고 있음		
교육환경 보호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1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전용면적(㎡)	세대수	구성비(%)	비 고
-	-	98	100.00	
A - TYPE	21A	34	34.7	
B - TYPE	29A	30	30.6	
C - TYPE	36A	34	34.7	

※ 행복주택 건립 규모 및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따름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현 주민의 생활은 일부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형적인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상을 보이고 있고, 유휴 노동인력을 정비구역 내 사업시행 시 주민고용 등을 통해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함

**17. 세입자 주거대책**

- 신설되는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 공동주택 건설시 우선 공급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 18.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함

### 가. 공동주택(행복주택) 건립 부지 시행자 무상양여분 총괄

- 행복주택 건립 부지 내 국·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 후 완료하였음.

### 나. 공동주택(행복주택) 건립 부지 지자체 무상귀속분 총괄

- 도로 1개소(면적 650.7m<sup>2</sup>)

## 19. 관련도서: 실음생략

**【붙임 1】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사항**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오룡동 9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90호선)사업
  -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90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3,423㎡(도로) - 금회 준공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	
소로2-1090	605m	8~13.5m	건고525 (1967.7.25.)	115m	8~13.5m	650.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전북개발공사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3. 31.

6. 사용 또는 수용 토지조서

번호	동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오룡동	948	도	650.7	650.7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1 필지				650.7	650.7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 - 5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04. 13.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2-0001호 (2022. 04. 13.)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
- ③ 허가목적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연안침식보강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산 13-17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3,880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2. 04. 13. ~ 2051. 03.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2 - 5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4. 13.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협의 2022-0001호 (2022. 04. 13.)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성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③ 허가목적 : 청자다발과 닻돌 등이 발견된 선유도 및 무녀도 인근  
해역에 대한 시굴조사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산 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35,000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2. 04. 13. ~ 2022.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2-53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산북동 2479-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4. 15.



##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산북동 2479-3번지 일원(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부지면적 : 3,640m<sup>2</sup>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587.55m<sup>2</sup>, 연면적 1,452.69m<sup>2</sup>

구분	층별	건축물 세부현황		비고
		면적(m <sup>2</sup> )	건축물 용도	
1동	PIT층	(60.42)	PIT(점검실)	(연면적 제외)
	1층	510.66	민원실, 동장실, 문서고, 통신실, 휴게실, 공용부분	
	2층	595.35	사무실, 회의실, 재활실, 건상생활실천실, 창고, 공용부분	
	3층	382.68	북카페, 준비실, 공용부분	
연면적 합계		1,549.11		(용적률산정 연면적)

##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 인가고시일 ~ 2022. 3. 31.

변경 : 인가고시일 ~ 2022. 4. 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No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산북동	2479-3	답	2,350	2,350	군산시		
2	산북동	2479-4	답	1,160	1,160	군산시		
3	산북동	2479-7	답	148	130	군산시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2022-1호

#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칭: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목적: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3. 사업위치: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일원
4. 사업비: 5,970백만원(국비 2,973 지방비 1,197)
5.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개년)
6.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사통팔통문화복지센터(옥서면청사)
  - 지역경관개선: 화합의 테마거리 조성, 가로환경정비(간판)
  -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등
7. 사업시행자: 군산시장(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일괄 위·수탁)
8. 사업효과: 옥서면 중심지의 정주여건 기반 정비 및 기능 강화
9.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축산과(☎063-454-5895) 및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775호

##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4월 5일

군 산 시



군산시 공고 제2022-785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63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2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군 산 시 장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635-5번지 외 4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2) 명 칭 : 구암동 317-4번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2-4호선 외 2개노선)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로 2-4 : B=2.8~3m, L=152.3m, A=453㎡(폭원확장구간 개설)

- 2) 소로 3-871 : B=1.5~1.7m, L=129.8m, A=218m<sup>2</sup>(폭원확장구간 개설)
- 3) 중로 1-23 : 당초 - B=20m, L=313.5m, A=4,968m<sup>2</sup>(노선 신설)  
 변경 - B=20m, L=313.5m, A=5,576m<sup>2</sup>(노선 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3(갈산리)
- 2) 사업시행자 성명 : (유)에스지산업개발 대표 유승욱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로2-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635-5	도	145	12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435				
2		629-9	장	7	6	이철영	군산시 구암로 47(조촌동)				
3		629-2	장	2,378	196	이철영	군산시 구암로 47(조촌동)				
4		631-1	장	2,287	107	유한회사금강장례 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5		631-5	대	1,190	34	유한회사예영상사	군산시 조촌동 631-5				
6		631-9	창	420	35	신동숙	군산시 계산로90, 105동601호 (지곡동,지곡동엠코타운)				
7		631-8	창	929	16	유한회사제일자동차부품상사	군산시 조촌동 631-8				
8		631-10	창	243	19	유한회사제일자동차부품상사	군산시 조촌동 631-8				
9		631-4	구	10	3	고려제지주식회사	군산시 구암동 333				
10		632-3	구	677	25	페이퍼코리아주식 회사	군산시 조촌동 2				
계	10필지			8,286	453						

○ 소로3-871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구암동	318-2	도	1,280	5	재단법인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	전라북도 광주군 관주읍 양림정 226				
2		318-3	구	169	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318-16	답	2	2	군산시					
4		318-7	도	23	5	군산시					
5		610-19	도	34	3	국(국토교통부)					
6		317-5	도	340	87	군산시					
7		606-8	구	22	3	국(국토교통부)					
8	조촌동	706-7	장	2	2	유한회사금강장례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9		705-7	장	1	1	유한회사금강장례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10		706-8	구	21	2	국(국토교통부)					
11		705-5	도	8	1	국(국토교통부)					
12		633-11	대	13	13	유한회사금강장례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13		634-5	도	255	50	국(국토교통부)					
14		635-5	도	145	30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계	14필지			2,315	218						

○ 중로1-2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구암동	318-2	도	1,280	44	165	재단법인미국남장 로교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전북 광주군 관주읍 양림정 226				
2		610-20	도	5,935	56	90	국(국토교통부)					
3		317-1	도	549	191	242	군산시					
4		317-3	구	592	146	323	한국농어촌공사					
5		317-2	답	86	32	77	군산시					
6		403-6	대	678	678	678	군산시					
7		262-7	구	1,921	419	599	한국농어촌공사					
8		403-16	대	969	969	969	군산시					
9		403-17	대	678	678	678	군산시					
10		407-8	구	182	182	182	국(농림수산부)					
11		262-6	구	494	227	227	군산시					
12		262-8	도	130	32	32	군산시					
13		262-4	도	1,065	365	365	군산시					
14		407-16	답	465	465	465	군산시					
15		405-4	구	264	40	40	국(농림수산부)					
16		403-14	전	216	216	216	군산시					
17		403-15	잡	131	131	131	군산시					
18		403-3	도	307	97	97	오금선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44				
계	18필지			15,942	4,968	5,576						

군산시 공고 제2022-810호

##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 다. 사업량 : 주민이주 25동, 사면정비 등
- 라. 사업자 : 군산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별도붙임(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 3.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2. 04. 13. ~ 2022. 04. 28.(15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군산시 소룡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5. 기타사항

- 가. 본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개별통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권리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소룡동	7-1	임	9,025	1,600	기획재정부					
2	군산시	소룡동	7-2	임	5,455	192	군산시					
3	군산시	소룡동	1019-14 4	임	693	693	정*균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64-8				
4	군산시	소룡동	1020-1	대	423	423	김해*씨 안경공파신 풍리종중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72				
5	군산시	소룡동	1020-2	대	87	87	황*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0-2				
6	군산시	소룡동	1020-3	대	145	145	김*봉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0-3				
7	군산시	소룡동	1020-4	대	142	142	박*순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0-4				
8	군산시	소룡동	1020-5	대	112	112	심*덕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475-15(소룡동)				
9	군산시	소룡동	1020-7	대	79	79	심*덕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475-15(소룡동)				
10	군산시	소룡동	1020-8	전	99	99	심*덕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475-15(소룡동)				
11	군산시	소룡동	1021-9	대	184	184	유*연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37				

12	군산시	소룡동	1021-10	대	153	153	박*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5-1 한올아파트 105동 909호				
13	군산시	소룡동	1021-11	대	177	177	김*영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1-11				
14	군산시	소룡동	1021-31	대	619	619	이*윤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65-26				
15	군산시	소룡동	1021-33	대	140	140	조*숙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94-5				
16	군산시	소룡동	1024-26	대	208	208	원*자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4-26				
17	군산시	소룡동	1024-33	전	133	133	박*남외 3인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4-33				
18	군산시	소룡동	1024-34	전	96	96	장*중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48-16	주식회사 전북은행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가압 류	
19	군산시	소룡동	1024-44	전	363	363	박*남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4-33				
20	군산시	소룡동	1024-58	대	126	126	원*자	전라북도 군산시 바람꽃길 47-4(소룡동)				
21	군산시	소룡동	1048-14	대	132	132	배*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해실로 19-3(해곡동)				
22	군산시	소룡동	1048-16	전	20	20	장*중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48	주식회사 전북은행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가압 류	
23	군산시	소룡동	1048-18	전	288	288	김*수외 1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4동 204호	정*준 외 1인	전라남도 장성 군 장성읍 영 천리 1493-26	가압 류	
24	군산시	소룡동	1048-20	대	174	174	김*복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45 109동1306호(나운동,롯데아파트)				
25	군산시	소룡동	1048-21	대	144	144	황*욱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산7				
26	군산시	소룡동	1508	구	674	189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군산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연번	소재지			편 입 물 건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도로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성 명	주 소	
						수량	단위			
8	소룡동	1019-14 4	해망로 471	주택	스라브블럭(2층)	81.7	m <sup>2</sup>			
				창고	스레트블럭	72.8	m <sup>2</sup>			
				창고	스레트블럭	12.5	m <sup>2</sup>			
				창고	스레트블럭	8.0	m <sup>2</sup>			
5	소룡동	1019-14 4	해망로 471-1	주택	블럭스레트	57.1	m <sup>2</sup>			
4	소룡동	1019-14 4	해망로 471-3	주택	스레트블럭	44.1	m <sup>2</sup>			
				창고	스레트블럭	1.7	m <sup>2</sup>			
2	소룡동	1019-14 4	해망로 471-5	주택	블록	82.5	m <sup>2</sup>			
26	소룡동	1019-14 4	해망로 475-2	주택	블록(2층)	61.9	m <sup>2</sup>			
7	소룡동	1020-1	해망로 473	주택	블록(2층)	33.0	m <sup>2</sup>	진*순	군산시 소룡동 1355-13	
				까데기		4.1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4.1	m <sup>2</sup>			
6	소룡동	1020-1	해망로 473-1	주택	시멘트벽돌조	1.0	m <sup>2</sup>			
3	소룡동	1020-1	해망로 473-1	주택	블록	78.3	m <sup>2</sup>			
				주택	블럭(2층)	30.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4.0	m <sup>2</sup>			

1	소룡동	1020-1	해망로 475	주택	블록(2층)	180.2	m <sup>2</sup>			
9	소룡동	1020-2	해망로 475-9	주택	블록	66.8	m <sup>2</sup>			
				화장실	블록	4.8	m <sup>2</sup>			
				담장	블록	4.8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19.2	m <sup>2</sup>			
10	소룡동	1020-3	해망로 475-11	주택	블록	94.8	m <sup>2</sup>	김*봉	군산시 소룡동 1020-3	
				담장	블록	21.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6.3	m <sup>2</sup>			
11	소룡동	1020-4	해망로 475-7	주택	블록	57.0	m <sup>2</sup>			
				창고	블록	24.6	m <sup>2</sup>			
				담장	블록	6.4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33.0	m <sup>2</sup>			
12	소룡동	1020-5	해망로 475-13	주택	블록	68.1	m <sup>2</sup>			
				창고	블록	18.3	m <sup>2</sup>			
				담장	블록	31.3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42.5	m <sup>2</sup>			
13	소룡동	1020-8	해망로 475-15	주택	블록	109.5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9.0	m <sup>2</sup>			
25	소룡동	1021-9	해망로 477	주택	블록(2층)	114.0	m <sup>2</sup>	유*연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반곡길 137	
				화장실	블록	6.1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54.8	m <sup>2</sup>			
28	소룡동	1021-10	해망로 475-6	주택	블록(2층)	131.3	m <sup>2</sup>	박*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5-1 한올아파트 105동 909호	

				창고	블록	7.6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32.4	m <sup>2</sup>			
27	소룡동	1021-11	바람꽃길 5	주택	블록	70.7	m <sup>2</sup>	김*영	군산시 소룡동 1021-11	
				창고	블록	9.0	m <sup>2</sup>			
				담장	블록	15.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50.4	m <sup>2</sup>			
				주택	블록	108.2	m <sup>2</sup>			
14	소룡동	1021-31	바람꽃길 11	주택	블록	108.2	m <sup>2</sup>	이*윤	군산시 평화동 65-26	
				마당	콘크리트	54.1	m <sup>2</sup>			
15	소룡동	1021-31	바람꽃길 11	주택	블록	65.4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19.5	m <sup>2</sup>			
30	소룡동	1021-33	바람꽃길 7	주택	블록	106.4	m <sup>2</sup>	조*숙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94-5	
				화장실	블록	3.4	m <sup>2</sup>			
				창고	블록	9.2	m <sup>2</sup>			
				담장	블록	9.4	m <sup>2</sup>			
24	소룡동	1024-26	바람꽃길 47-4	주택	블록	142.6	m <sup>2</sup>	원*자	전라북도 군산시 바람꽃길 47-4 (소룡동)	
				창고	조립식	16.4	m <sup>2</sup>			
				담장	블록	14.4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102.0	m <sup>2</sup>			
23	소룡동	1024-33	바람꽃길 33-3	빌라	블록(3층)	798.2	m <sup>2</sup>	박*남 외 4 인	군산시 소룡동 1024-33	
				마당	콘크리트	142.8	m <sup>2</sup>			
22	소룡동	1024-34	바람꽃길 23-8	주택	블록	72.8	m <sup>2</sup>			
				주택	블록	40.9	m <sup>2</sup>			
29	소룡동	1024-58	바람꽃길 51	주택	콘크리트	157.8	m <sup>2</sup>	원*자	전라북도 군산시 바람꽃길 47-4	

				차고	조립식	47.3	m <sup>2</sup>		(소룡동)	
				창고	조립식	10.4	m <sup>2</sup>			
				창고	조립식	11.2	m <sup>2</sup>			
				창고	조립식	11.7	m <sup>2</sup>			
				마당	조립식	53.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90.1	m <sup>2</sup>			
18	소룡동	1048-14	바람꽃길 23-14	주택	블록	81.4	m <sup>2</sup>	배*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해실로 19-3(해곡동)	
				담장	함석	25.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4.6	m <sup>2</sup>			
20	소룡동	1048-16	바람꽃길 23-4	주택	블록	43.6	m <sup>2</sup>	장*동	군산시 소룡동 1048	
				마당	콘크리트	13.2	m <sup>2</sup>			
19	소룡동	1048-18	바람꽃길 23-10	주택	블록	117.6	m <sup>2</sup>	손*주	군산시 소룡동 1048-18	
				담장	블록	29.6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3.5	m <sup>2</sup>			
16	소룡동	1048-20	바람꽃길 23-16	주택	블록(2층)	177.5	m <sup>2</sup>	김*복	군산시 하나운로 45, 109동 1306 호(나운동, 롯데아파트)	
				담장	울타리	13.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5.2	m <sup>2</sup>			
17	소룡동	1048-21	바람꽃길 23-20	주택	블록	120.7	m <sup>2</sup>	황*욱	군산시 소룡동 1048-14	
				창고	블록	1.4	m <sup>2</sup>			
				담장	블록	22.0	m <sup>2</sup>			
				마당	콘크리트	23.8	m <sup>2</sup>			
21	소룡동	1508	바람꽃길 27	주택	블록	64.3	m <sup>2</sup>			
				주택	블록	43.2	m <sup>2</sup>			

군산시 공고 제2022 - 840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2. 4. 13.

군 산 시 장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 하고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2. 4. 13. ~ 2022. 5. 3. (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2. 4. 13. ~ 2022. 5. 3.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2년 5월 3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2-4959)

라. 제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17(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의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변경)사유	관리 기관
			유형	등급	면 적		
당초	소룡2	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A=5,230m <sup>2</sup>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파 재산보호	군산시청
변경	소룡2	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A=6,721m <sup>2</sup>	" (사업 편입면적 변경)	군산시청

### 5. 정비계획

구분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당초	소룡2	2022년 이후	5,000	마운딩(4.0*1.0)L=310m, 수로관 부설(380m),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등
변경	소룡2	2022~ 2023년	6,300	마운딩(4.0*1.0)L=310m, 수로관 부설(380m),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등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예산(국·지방비)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옥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가.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현황 1부.
-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사업 위치도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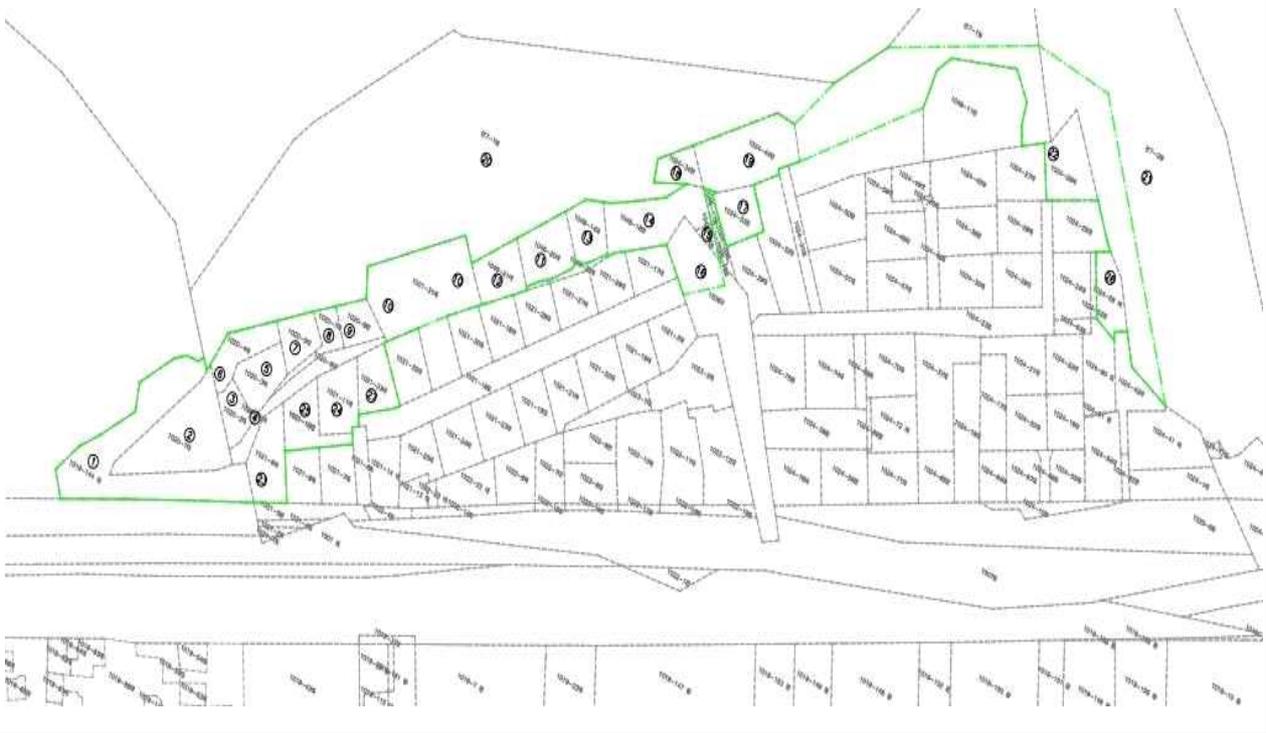


□ 변경 전 · 후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